

6 행정운영경비

6-1. 기본경비 집행현황

-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, 공공요금, PC 등 물품구입,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. 우리 금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기본경비 (B)	비율 (B/A)	비 고
합 계	259,988	3,404	1.31	
일반운영비	259,988	900	0.34	
여 비		1,923	0.74	
업무추진비		368	0.14	
직무수행경비		95	0.04	
자산취득비		118	0.05	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행정운영경비의 설정' 중 기본경비 항목
- ▶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(201-01)+공공운영비(201-02), 여비는 국내여비(202-01)+월액여비(202-02),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(203-01)+정원가산업무추진비(203-02)+부서업무추진비(203-04),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(204-01),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(402-01)

❖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세출결산액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	259,988
기본경비	2,666	4,319	3,293	3,350	3,404
비율 (%)	1.38	2.08	1.44	1.36	1.31

- ▶ '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

기본경비 연도별 변화



6-2. 자치단체 청사 관리·운영현황

- ▶ 우리 금정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28㎡이 적어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㎡, 백만원)

금정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(㎡)	금정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(㎡)	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(㎡)	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(백만원)
5,625㎡	6,453㎡	-828㎡	0

- ▶ '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'의 지방청사(면적)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

6-3. 인건비 집행현황

- ▶ 우리 금정구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(A)	인건비 (B)	비율 (B/A)	비고
합 계	259,988	49,139	18.90	
인건비(101)		39,232	15.09	
직무수행경비(204)		1,167	0.45	
포상금(303)		2,036	0.78	
연금부담금 등 (304)		6,704	2.58	

- ▶ 인건비는 보수(101-01), 기타직보수(101-02), 무기계약근로자보수(101-03),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(204-02), 포상금은 성과상여금(303-02),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(304-01), 국민건강보험금(304-02)이 해당함
- ▶ 보수(101-01)는 기본급, 수당, 정액급식비, 교통보조비, 명절휴가비, 가계지원비, 연가보상비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(7개 통계목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(A)	업무추진비(B)	비율(B/A)	비 고
합 계	259,988	370	0.14	
기관운영업무추진비(203-01)	259,988	204	0.08	
시책추진업무추진비(203-03)		165	0.06	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'14년 결산결과 203-01, 203-03 집행총액

❖ 인건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세출결산액(A)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	259,988
인건비(B)	39,708	41,331	44,277	47,056	49,139
인건비비율(B/A)	20.5	19.86	19.35	19.17	18.9

▶ '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

인건비 연도별 변화



❖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세출결산액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	259,988
업무추진비	348	348	387	364	370
비율 (%)	0.18	0.17	0.17	0.15	0.14

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



☞ 세출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
6-4. 업무추진비 집행현황

☐ 우리 금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◆ '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【별첨 1】

6-5. 국외여비 집행현황

■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출장기간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총 출장 인원(명)	국외여비 집행액 (백만원)	비고
2.8. ~ 2.16	선진교통시설 비교 시찰	스페인	6	19	
3.3. ~ 3.11.	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	미국(서부)	1	3.5	
3.25. ~ 4.4.	문화재 정책분야 지자체 역량강화 연수	오스트리아 체코	1	3.8	
3.28. ~ 4.4.	도시기초시설 및 문화관광시설 등 선진도시의 우수사례 벤치마킹	미국	10	22	
4.2. ~ 4.9	선진 청소행정 벤치마킹	호주, 뉴질랜드	6	14	
4.16. ~ 10.16.	중국 상해시 보타구 교환근무 파견	중국(상해)	1	0.6	
10.13. ~ 10.20.	청소년 보호정책 관련 국외연수	미국(동부)	1	2.1	
11.5. ~ 11.13.	2014년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	프랑스, 이탈리아	1	1	
11.12. ~ 11.16.	대만 가오슝시립도서관 협력교류 사업추진 방문	대만	1	0.6	
11.15. ~ 11.23.	2014년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연수	호주	1	4	단체장
12.8. ~ 12.13.	사회복지종합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	싱가폴 인도네시아	1	2	
12.22. ~ 12.24.	국제교류도시 자매교류 방문 (자매결연협약 및 실무협의 체결)	중국(상해)	7	4	단체장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(202-03 국외업무여비, 202-04 국제화여비)

6-6.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

■ 우리 금정구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세출결산액 (A)	의회경비 집행액 (B)	의회경비 비율 (B/A)	지방의원 정수 (C)	1인당 의회경비 (B/C)
259,988	664	0.26	13	51

- ▶ 대상 회계 및 집행액 : 일반회계, '14년 결산결과 의회비(205-01~09) 집행액
- ▶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(205-01), 월정수당 (205-02), 국내여비 (205-03), 의정운영공통경비 (205-05), 기관운영업무추진비 (205-06), 의장단협의체부담금 (205-07), 의원국민연금부담금 (205-08), 의원국민건강부담금 (205-09)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(205-04)임
- ▶ 의원 정원 : 13명 ('14.12.31 현재) 【별첨4】

❖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세출결산액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	259,988
의회경비	656	667	664	665	664
의원 정수(명)	13	13	13	13	13
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(%)	0.34	0.32	0.29	0.27	0.26
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	50	51	51	51	51

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



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지단체와 비교



6-7.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국외여비 집행액(A)	지방의원 정수(명)(B)	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(천원)(A/B)
26	13	2

▶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, 지방의원 정수는 2014.12.31일 기준 【별첨4】

6-7.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

(단위 : 천원, 명)

출장기간	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	출장지역	출장의원수 (동행공무원)	국외여비 집행액
2.7~2.12	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사례 벤치마킹 규정 반영	베트남, 캄보디아	6(3)	12,000
2.9~2.14	해외 선진지 행정운영 사례 벤치마킹 규정 반영	대만(가오슝, 타이페이)	7(3)	14,000

▶ 2014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,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

6-8. 맞춤형복지비 현황

■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(도지사, 군수, 구청장)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, 2014년 우리 금정구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대상인원 (A)	세출결산액 (B)	맞춤형 복지비 (C)	비율 (C/B)	1인당 평균배정액 (C/A)
922	259,988	1,404	0.54	1

- 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- ▶ 세출결산액 : '14년 세입·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
- ▶ 맞춤형복지비 : '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-사무관리비(201-01) 중 7.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

❖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연도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대상인원 (A)	822	820	837	871	922
세출결산액 (B)	193,703	208,066	228,852	245,496	259,988
맞춤형 복지비 (C)	1,115	1,169	1,221	1,246	1,404
비율 (%) (C/B)	0.58	0.56	0.53	0.51	0.54
1인당 평균배정액 (C/A)	1.4	1.4	1.5	1.4	1.5

☞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현황

- 2010년 집행액은 1,115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58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40만원
- 2011년 집행액은 1,169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56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40만원
- 2012년 집행액은 1,221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53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50만원
- 2013년 집행액은 1,246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51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40만원
- 2014년 집행액은 1,404백만원, 비율은 세출결산액의 0.54%,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50만원

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



6-9. 연말지출 비율

■ 우리 금정구에서 2014년 11월~12월 중에 지출(원인행위)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연말 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비율 (B/A)
계	25,311	8,375	33.09
시설비 (401-01)	25,228	8,368	33.17
감리비 (401-02)	73	2	2.42
시설부대비 (401-03)	10	5	55.27
행사관련시설비 (401-04)	0	0	0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본청분만 해당(직속기관, 사업소 등은 제외)

❖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도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세출결산액 (A)	33,114	36,429	32,049	33,264	25,311
연말 (11~12월) 지출원인행위액 (B)	3,658	4,362	4,093	2,506	8,375
비율 (%) (B/A)	11.05	11.97	12.77	7.54	33.09

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



☞ 연말지출 비율은 11~12월 지출 원인 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사유로는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공사에 대한 지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

6-10.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

■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3연말 체납누계액(A)	2014연말 체납누계액(B)	증감액(B-A)
합 계	14,150	12,746	-1,404
지방세	1,470	1,634	164
세외수입	12,680	11,112	-1,568

▶ 대상회계 : 일반회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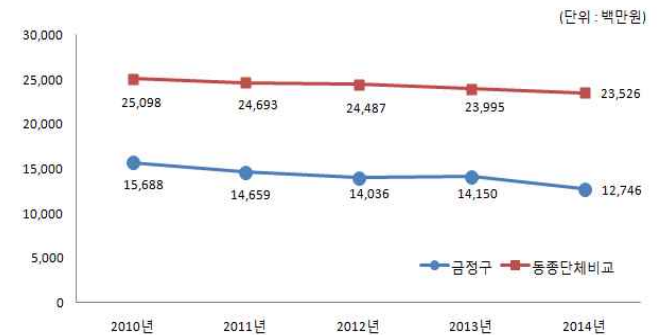
☞ 장기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납세 의식의 저조 등 악화된 여건하에서도 지방세 체납액징수특별전담팀 구성, 체납차량 주야간번호판영치, 예금 및 채권 압류, 부동산 공매 의뢰, 차량 자체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❖ 체납액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도별				
	2010	2011	2012	2013	2014
합 계	15,688	14,659	14,036	14,150	12,746
지방세	1,188	1,319	1,544	1,470	1,634
세외수입	14,501	13,340	12,492	12,680	11,112

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



☞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

- 2010년 : 체납이월액 감소 (1,345백만원 ⇒ 969백만원, 376백만원 감소)
- 2011년 : 재산세 감면철회(글로벌금융위기 관련 감면제도 2010.12.31 일몰)
- 2012년 : 체납이월액 증가 및 지방세 세제개편
- 2013년 : 체납이월액 누증과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, 세외수입 경진대회 개최와 지방세 체납액징수특별전담팀 운영 등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
- 2014년 :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체납액 누증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, 「지방세외수입법」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에 따른 체납처분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

6-11.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

☐ 지방자치단체(이하 자치단체)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, 그 성격은 일반재원(기타수입, 223-09)에 해당합니다. 아울러, 우리구의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❖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고은행	약정기간	협력사업비 총액	예산 편성액 (예산구분)	출 연 액	세입처리액 (세입처리일)	회계구분
합 계			100	25	25	25	
제1금고	부산은행	2013~2016	100	25	25	25 (2014.7.31.)	일반회계

- ▶ 제1금고 : 일반회계,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,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
- ▶ 제2금고 등 :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,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
- ▶ '15.1.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('14.5.28)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

❖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 · 집행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 산 편성액	통계목	사업명(사용용도)	집행액	잔 액 (불용액 등)	추진부서
			해당사항 없음			